

12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 보고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설립준비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위원장 정진모
서 기 한규철

1. 조 직

• 위원장 : 정진모 • 서 기 : 한규철 • 회 계 : 이종득 • 위 원 : 김한성, 권택성

2. 회의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7. 12. 21(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조직하다.

위원장 - 정진모 목사 서 기 - 한규철 목사 회 계 - 이종득 장로
총 무 - 김한성 목사 위 원 - 권택성 장로

② 제102회 총회가 헌법위원회 설립을 허락하고, 설립 준비에 필요한 일을 본 위원회에 맡겼으므로 본 위원회의 명칭을 현재의 '헌법위원회 설립연구위원회'에서 '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로 변경하여 줄 것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가결하다.

③ 헌법위원회 운영, 시행,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추가경정 예산 900만원(3개 권역×300만원)을 청원하기로 가결하다.

④ 차기 회의는 1월 26일(금)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8. 1. 26(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전 회의록은 "4. 차기 회의는 1월 26일(금)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를 삽입하여 받기로 하다.

② 헌법위원회 설립, 운영을 위한 관련 총회규칙 제정과 운영 세칙안을 마련하기로 하다.

③ 헌법위원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전국 권역별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기로 하다.

가. 서울서북, 중부호남, 영남 3개 권역으로 5월 24일(목), 29일(화), 31일(목)에 진행키로 하다.

나. 장소와 시간, 순서자는 섭외 후 선정하기로 하다.

다. 권역별 공청회 추진계획안을 서기가 작성하여 와서 차기회의 시 심의하기로 하다.

라. 작성된 본안을 가지고 총회 임원회 및 정치부와 연석회의를 가지기로 하다.

④ 차기 회의는 2월 20일(화)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8. 2. 20(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헌법위원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전국 권역별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가. 중부호남 권역 - 4월 24일(화), 대전남부교회(류명렬 목사 시무),
설교는 총회장 전계현 목사
나. 영남 권역 - 5월 24일(목), 대구서현교회(박혜근 목사 시무), 설교는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
다. 서울서북 권역 - 5월 31일(목), 광명교회(최남수 목사 시무),
설교는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
- ③ 공청회 준비를 위한 1차 회의를 3월 15일(목)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정치부, 재판국, 규칙부 부장 및 서기와 연석하여 모이기로 하다.
- ④ 공청회 준비를 위한 2차 회의를 4월 19일(목)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함북노회 김영범 목사와 연석하여 모이기로 하다.
- ⑤ 총회 중간감사를 위해 감사부에서 요청한 감사서류 제출 협조의 건과 관련하여 서류 제출키로 가결하다.
- ⑥ 추경 예산 지급을 재정부에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 및 유관부서 연석회의)

☞ 일 시 : 2018. 3. 15(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위원회 서기가 연석회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가. 논의 - 필요성,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위협성), 행정적인 면, 유관 부서 간 공조 및 협조의 건
나. 방향 - 헌법위원회 설립의 당위성 합의
- ③ 권역별 공청회 설교자 변동은 없고, 발제자로 규칙부장 신현철 목사와 정치부장 이종석 목사를 추가하기로 하다.
- ④ 4월 19일 연석회의에 규칙부장, 정치부장, 재판국 서기 참석키로 하다.

5) 제5차 회의(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 및 유관부서 연석회의)

☞ 일 시 : 2018. 4. 19(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4월 24일 중부호남 권역 공청회를 진행하기 위한 전체적 점검을 하다.
- ③ 차기 회의는 5월 2일(수)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설립준비위원 및 유관부서 연석회의로 모이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 및 유관부서 연석회의)

☞ 일 시 : 2018. 5. 2(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증부호남 권역 공청회(4/24)를 돌아보고 평가하다.
- ③ 영남 권역 공청회(5/24)를 준비하다.
가. 총회부서기 김종혁 목사를 격려사로, 총회 부회계 이대봉 장로를 2부 공청회 시작기도로 순서자 추가하기로 하다.
나. 5월 24일 공청회 당일 10시까지 모이기로 하다.
- ④ 5월 31일 서울서북 권역 공청회 시 양성수 장로를 격려사로 순서 추가하기로 하다.

7) 제7차 회의(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 및 유관부서 연석회의)

☞ 일 시 : 2018. 5. 31(목) 13:30

☞ 장 소 : 광명교회 당회실

☞ 결의사항

- ① 권역별 공청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하다.
- ② 임원들과 연석회의 준비하기로 하다.
- ③ 헌법위원회 운영 관련 헌법개정안, 규칙개정안, 운영규칙을 차기 회의 시 논의하기로 하다.
- ④ 다음 회의는 6월 28일(목)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8) 제8차 회의(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 및 유관부서 연석회의)

☞ 일 시 : 2018. 6. 28(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공청회 결과 보고를 서기로부터 청취하다.
- ② 총회 임원 연석회의를 하기로 하고, 일시는 위원장,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 ③ 헌법위원회와 관련한 헌법개정안, 규칙개정안, 운영규칙안을 심의하다.
- ④ 심의한 헌법개정안, 규칙개정안, 운영규칙안의 수정안을 차기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하다.
- ⑤ 다음 회의는 7월 26일(목)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9) 제9차 회의(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 및 유관부서 연석회의)

☞ 일 시 : 2018. 7. 26(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총회장 연석회의는 8월 8일(수) 오전 10:30 분당 '한국칼빈주의연구원'에서 모이기로 하다.
- ③ 헌법위원회 관련 헌법 개정안, 규칙 개정안, 운영 규칙안을 확정하다.
- ④ 103회 총회보고서 작성은 임원에게 일임기로 하다.



10) 제10차 회의

☞ 일 시 : 2018. 8. 27(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102회기 위원회 활동사항을 전체 점검하다.
- ③ 103회 총회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확정짓고, 다음과 같이 제103회 총회에 청원키로 하다.
 - 가. 헌법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법안 개정 청원
 - ① 총회헌법(정치, 권징조례) 개정(안)
 - ② 총회규칙 개정(안)
 - ③ 총회헌법위원회 운영규칙(안)
 - 나. 헌법위원회 설립 준비위원회 1년 연장 청원

3. 주요사업

1) 헌법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

(1) 행사 취지 : 제102회 총회가 헌법위원회의 신설을 허락하고, 설립 준비 및 관련법의 개정 작업을 본 위원회에 맡겨준바, 헌법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권역별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함.

(2) 행사 개요

권역구분	중부호남 권역	영남 권역	서울서북 권역
일 시	2018. 4. 24(화) 10:30 ~ 12:30	2018. 5. 24(목) 10:30 ~ 12:30	2018. 5. 31(목) 10:30 ~ 12:30
장 소	대전남부교회 (류명렬 목사 시무)	대구서현교회 (박혜근 목사 시무)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 시무)
대 상	노회장·서기, 총회 총대, 정치(임사)부장·부원, 기타 관심 있는 지 교회 당회원		
	2부 진행	위원회 서기 한규철 목사	
① 헌법위원회 경과보고	위원회 서기 한규철 목사		
② 헌법위원회 설치관련 제언(提言)	재판국 서기 김영범 목사		
③ 헌법위원회 설치의 당위성 및 유익	정치부장 이종석 목사		
④ 헌법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려 및 해결방안	규칙부장 신현철 목사		

(3) 행사결과 및 결산 보고

- ① 중부호남 권역 : 노회장, 서기, 총회총대, 정치부장(임사부장)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헌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들을 나눔.
- ② 영남 권역 : 노회장, 서기, 총회총대, 정치부장(임사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헌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들을 나눔.
- ③ 서울서북 권역 : 노회장, 서기, 총회총대, 정치부장(임사부장) 등 90여명이 참석하여 헌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들을 나눔.

수 입 부		지 출 부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위원회의비	6,399,000원	*3개 권역 여 비	2,060,000원
		*3개 권역 순서비	2,300,000원
		*기독신문 광고비 (5단 흑백)	1,750,000원
		*3개 권역 현수막 제작비 (실내1, 실외1)	289,000원
합계	6,399,000원	합계	6,399,000원



(4) 발제 원고

헌법위원회 경과보고

(한규철 목사 / 現 총회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서기)

I. 제101회 총회가 ‘헌법위원회 설립연구위원회’ 설치

1. 함북노회가 현의한 ‘헌법위원회 설립의 건’과 관련하여 연구위원 5인 선정하여 연구 보고토록 결의

1) 헌법위원회 설치 관련 함북노회의 현의 개요

- ① 총회헌법, 규칙, 결의,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한 이의와 해석 청원이 있을 때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 해석을 해줌으로써 산하 치리회의 오판과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법을 집행할 도울 수 있음.
- ② 헌법 연구와 개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③ 이상과 같은 이유로 총회 헌법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함.

II. 제102회 총회가 헌법위원회 설립을 결의하고, 설립준비를 위해 기존 위원회를 한 회기 연장 결의

1. 위원회 연구결과 보고내용

: 헌법위원회 혹은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로교단 두 곳과 본 교단을 비교 연구

	예장합동	A 장로교단	B 장로교단
설치 여부 및 명칭	별도의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매년 개최되는 총회를 통해 아래 법적 근거에 따라 현장에서 직결로 유권 해석함.	헌법위원회 → 법제위원회 ① 상임위원회임 ② 위원은 9인(목사6, 장로3) ③ 3년 조로 운영 ④ 20여명의 협력위원을 둠 ⑤ 정치부는 없음	헌법위원회 ① 상임위원회임 ② 위원은 9인(목사5, 장로4) ③ 3년 조로 운영 ④ 3인의 법률전문가를 두며 이는 비회원(비총대)도 가능
관련 법조항 및 임무	헌법 정치 제12장 제4조 총회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 관계를 총괄하며,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현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	총회규칙 제3장 제12조 (상임위원회) 9항 <u>법제위원은 헌법과 규칙 등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선정한다.</u> 총회규칙 제3장 제13조 (상임위원회의 임무) 1-4항 법제위원회는 ①분회	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 (총회의 직무)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헌법 권징 제6장 제2절 제124조 (재심사유)

	예정합동	A 장로교단	B 장로교단
	<p>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산하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하며 교통하며 신뢰(信賴)하게 한다.</p> <p>동 제12장 제5조 1항 <u>①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을 해석 할 전권이 있고 교리(敎理)와 권징에 관한 쟁론(爭論)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不道德)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勸戒)하며 변증(辨證)한다.</u></p> <p>동 제8장 제2조 1항과 2항 <u>①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爭論) 사건이 발생하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서에 따라 상회에 상소함이 가하며,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適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各會)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u></p> <p><u>②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u></p>	<p><u>규칙을 포함한 제 법규의 제정 및 개정안을 준비하거나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제 규칙을 해석하는 일을 담당하고 매년 변경된 규칙을 정리하여 차기 총회에 제출한다.</u></p> <p><u>②헌법에 관하여 연구하되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할 때나 하회에서 상정된 헌법개정 또는 수정안을 심의 보고하고 총회 개회 혹은 폐회기간 중에 헌법에 질의가 있을 시 해석하는 일을 담당한다.</u></p> <p><u>③각 노회회의록을 총회 2개월 전에 검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는 일을 담당한다.</u></p> <p>※제62회 총회(2012년) 시 규칙개정을 통해 규칙위원회, 헌법위원회, 회의록 검사위원회가 법제위원회 하나로 통합 됨.</p>	<p>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재심 사유가 됨.</p> <p>헌법시행규정 제2조(용어) ... 타당한 법 해석이라 함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말하며,...</p> <p>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 (적용 순서) 적용순서는 총회헌법-헌법시행규정-총회규칙 -총회결의-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고,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p> <p>헌법시행규정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 해석, 헌법개정) <u>①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목사 5, 장로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u></p> <p><u>②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 직권)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u></p> <p>재판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p>



	예정합동	A 장로교단	B 장로교단
	<p><u>회에서 어떤 일을 체결 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 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 교회의 결정이 된다.</u></p> <p>총회규칙 제8조 (총회 법체계) 총회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p> <p>① 최고법: 헌법, 규칙</p> <p>② 당부서 조직법: 기관 정관(법인), 운영규정 (위원회,상비부)</p> <p>③ 사업시행법(내규) : 시행령-시행세칙-시행지침</p>		<p>접수일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u>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 판단을 말한다.</u></p> <p>④ 헌법위원회가 법리 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이 헌법 권징 제124조(재심사유) 제6항에 해당될 때 재심청구권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p> <p>⑤ 헌법(헌법시행규정 포함)과 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결의로도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에 질의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고,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나 규칙부의 해석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p> <p>⑥ 헌법해석할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을 1회 요구할 수 있다.</p> <p>⑦ 총회 공천위원회는 헌법위원</p>

	예정합동	A 장로교단	B 장로교단
			<p>회에 반드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변호사를 1인 이상 공천하여야 하며, 헌법위원회는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헌법위원장에서 선임한다.</p> <p>⑧ 헌법위원 공천 시 전국 5개 권역 중 1개 권역에서 2인을 초과하여 공천하지 못하며, 총회 폐회 후 보선은 총회임원회에서 한다.</p> <p>⑨ 헌법개정안은 헌법위원회 혹은 헌법개정위원회가 총회 본회에 상정한다.</p> <p>⑩ 헌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상정되면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 15인 이상을 선임하여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이를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여 구성할 수 있다.</p> <p>⑪ 헌법위원회는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개정안이 노회 수의를 거쳐 공포되고 헌법책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조직대로(위원 교체 없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p> <p>총회규칙 제3장 제14조 (상임위원회의 임무) 제2항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관한 연구와 해석과 판단을 담당</p>



III. 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의 입장

1. 총회 헌법위원회 신설을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함

- ① 본 교단 헌법은 교단에서 인준한 시행세칙이나, 헌법해설집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회, 노회 현장에서 구체적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총회 후 총회 차원에서의 헌법해석의 필요성이 필연적임.
- ② 실제로 매년 회기 중에 총회로 접수되는 서류와 민원 전화의 상당 부분이 헌법 해석과 교회재판에 관련된 질의임.
- ③ 헌법 정치 제12장(총회) 제5조(총회의 권한) 1항은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라 규정하고 있는바, 총회 개회 중에는 본회가 이를 처리하면 되지만 총회 파회 이후에 발생하는 헌법해석 문제는 처리할 법적 근거나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차기 총회까지 답변이나 처리를 미룸으로써 산하 노회, 지교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④ 총회의 최종적 헌법해석은 산하 치리회의 판결에서 부분적으로 파생되는 오해로 말미암은 사회법적 소송을 줄일 수 있고, 공정한 법률 집행을 도와 교회의 안정과 화평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헌법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부분들

- ① 헌법해석 질의를 올리는 절차, 서류, 당회와 노회 경우 문제에 대한 지침이 필요
- ② 총회 회무 중에는 본회가, 총회 파회 후에는 헌법위원회가 해석할 권한을 갖는다는 법 조항 신설이 필요함(헌법 개정, 혹은 총회규칙 개정)
- ③ 장로회 정치 원리는 치리회 중심 정치이므로, 회기 중 접수된 질의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의 효력 발생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구됨.
- ④ 헌법위원회의 신뢰와 권위가 담보되어야 함
 - 명확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 (구체적 교단헌법 조항이나 총회결의 필요)
 - 위원은 법률적 전문성을 가질 뿐 아니라, 객관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
 - 위원의 자격, 권역 등을 안배한 구성 및 공천과 관련한 지침이 필요함
 - 총회재판 계류 중인 건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질의와 답변은 문서로만 해야 함
- ⑤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헌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내규(안)와 관련법(총회헌법 혹은 총회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103회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함(*)

헌법위원회 설치 관련 제언(提言)

(김영범 목사 / 現 총회 재판국 서기)

I. 들어가는 말

헌법위원회 설립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헌법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102회 총회가 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를 허락해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발의하였다든 이유로 발표하게 됨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제 우리 총회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다른 대형교단과 같이 헌법위원회가 상설화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아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다.

현대사회가 갈수록 분화되고 개인의 권익에 대한 주장이 증가될수록 권리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이로 인한 소송의 증가는 이제 국가 사법기관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섬으로 법조기관의 피로도도 폭발 직전에 있다는 하소연을 듣기도 하는데 이는 과언이 아니다. 이는 교회 및 교단에도 동일한 현상이다. “한국교회는 소송 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지난 101회기 총회 재판국의 재판건만 해도 30여건이 넘었고 이에 대한 재판국원들의 대소 모임이 총 130여회를 넘었다는 이야기는 이를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다. 102회기인 지금도 상급심과 하급심에서 소송은 여전히 증가추세이다. 교회분쟁이 심각하다는 말이다. 물론 이 가운데는 소송의 남용 및 남발에 해당되는 것도 상당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소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것이다.

항간에 ‘우리 총회는 법이 없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한다. 과연 우리에게 법이 없다는 말인가? 분명 우리는 역사적이고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훌륭한 명문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헌법에 준하여 현재 우리 총회는 각종 규칙과 규정, 기관의 정관(법인), 운영규정(위원회, 상비부) 사업 시행(내규)에 있어서의 시행령, 시행세칙, 시행지침 등이 엄존한다(개인적으로 헌법 이외의 각 기관의 규칙과 규정 그리고 정관 등이 헌법에 불합치한 부분이 발견된다는 점은 논외로 한다). 이렇게 엄연히 실체법이 존재함에도 법이 없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법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법치주의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부재라 할 수 있다. 이 말은 법의 실천이 실종되었다는 말과 동시에 법에 의한 법의 집행이 상실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 우리 총회는 ‘법(실체법)은 있는데 법(바른 법의 집행)이 없다.’

누구나 교단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우리 교단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또한 법이 남용되고 있다는 말임과 동시에 법이 실종되었다는 말이다. 명문화된 실체법은 있는데 실상 실체적 진실을 밝힐 법 집행이 심히 왜곡되거나 남용되어 법이 실종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 말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법의 적용에 커다란 하자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면 법 적용의 하자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는 곧 ‘법 해석’의 문제인 것이다. ‘법 해석’- 왜 법의 해석이 중요한가를 논할 시간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실체법인 헌법은 많은 부분 추상적이다. 구체성이 많이 결여 되어 있다. 그렇다고 시행령이나 시행세칙 같은 것도



없다. 이는 그만큼 구체적인 법 적용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법 해석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법의 해석을 통해 권리의 소재와 한도를 구체화하여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 구체적이고 바른 집행을 위해서는 법의 해석을 바르게 잘해야 한다.

문제는 이 법을 누가 해석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법 해석은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흔히 권한 없는 자들의 개인적인 법 해석을 유권해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소견 및 견해에 불과할 뿐이고 그런 해석은 법의 권능을 갖지 못한다. 이는 ‘유권해석’이란 낱말에 대한 의미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 해석은 법을 해석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기관)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 전문기관인 법원은 독립적이고도 최종적인 법의 해석과 적용의 권한을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 있어 법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법의 권위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II. 본론

1. 법 해석 유권기관에 의한 법 해석의 남용과 오용의 가능성 문제

본 교단 헌법에 보장된 유권해석의 기관은 총회, 재판국, 정치부 그리고 규칙부 정도라 할 수 있다. (본래 ‘유권해석’의 의미는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권적 해석 또는 강권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학리적 해석, 즉 문리해석 논리해석에 대응한다. 입법 해석, 행정 해석, 사법 해석으로 구분되는데 사법 해석에 있어서 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해 행하여지는 해석으로서, 판결로써 행해지므로 재판 해석이라고도 한다. 이는 법정 분쟁에 있어서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본래의 의미를 교단 헌법에 적용해 볼 때 재판적 성격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유권기관은 엄밀히 재판국과 총회 외에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 해석에 있어서 정치부와 규칙부는 권한이 있고, 총회파회 후 위임받은 안전에 대해서만 총회임원은 유권적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유권해석 기관마다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때이다. 그 이유는 법률의 해석 능력의 문제에서도 비롯될 수도 있고, 적지 않는 경우에 각 기관의 이해관계와 기관장의 정치적 성향과 주장에 따라 법의 해석이 왜곡되거나 남용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로 인해 총회와 산하 교회가 혼돈에 빠지거나 충격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 하겠다.

2. 법의 해석의 권한 없는 자(기관)에 의한 법 해석의 남용과 오용

1) 총회 밖에서의 유권해석의 권한 없는 자

법의 해석의 권한 없는 자들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이는 헌법에 의하여 법 해석의 권한을 부여받은 유권기관이 아닌, 소위 사설기관(언론기관 등) 및 개인이라 하겠다. 물론 개인적으로 법 해석에 대한 생각은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권한은 기껏해야 견해를 밝히는 정도일 뿐이요 결국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들에 의한 법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더욱더 인용해서도 안 된다. 이들은 법에 의해 법 해석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의 심각성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 집행에 있어 이들에 의한 해석을 의존한다는 점이다. 권한과 권위가 없는 법 해석 근거에 의한 법 집행이 헌법 질서의 혼란과 실종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2) 총회 내에서의 유권해석의 권한이 없는 자

법의 해석의 권한이 없는 자란 단지 사설기관(언론기관 등)이나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총회 내에서의 기관 중에도 법의 해석에 있어서 권한 없는 자(기관)가 있다. 작금에 총회 파회 이후에 임원의 권한에 대한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다. 총회 파회 이후에 임원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총회 파회 이후 임원회에 의해서 총회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안건들이 취급된다거나 위임받은 안건이 아닌 사건에 대한 법 해석이 남용되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가끔은 총회사무국 혹은 직원에 의해서 권한 없는 해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우리교단은 법 해석의 춘추전국 시대라 할 것이다.

이러한 권한의 남용에 의한 법 해석을 참고할 경우 그릇된 해석으로 인해 당회 혹은 노회, 총회가 재판할 때 자칫 불법, 위법, 부당한 재판이 초래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하여 재판의 결과, 즉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이는 사회법 소송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셈이 되고 말았다. 물론 적법한 판결임에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불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어찌되었든 현실은 교회재판의 불복에 의해 사회법 소송의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사회 법원과 변호인, 각종 대리인들의 주머니를 부풀리게 해 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 교회재판이 사회법에 의해 지배당함으로 교회재판의 권위가 한 없이 추락되고 말았다.

3. 총회의 법 해석의 권위에 대한 문제의 제기

우리 교단 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는 총회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본조 1항에 “총회는 교회 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리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는 최종적인 법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이것이 총회의 실체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총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오히려 총회의 결의와 판결 등에 많은 오해와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교인의 기본권, 총대의 기본권이 침해되기도 하고 불복 가능성도 높다. 성 총회에 대한 겸손함의 문제로만 여기기에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총회의 제 문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구조적인 문제인가? 정치적인 문제인가? 개인의 야욕에 의한 문제인가?

사건이지만,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과거 총대의 수가 몇 백 명에 불과한 총회에서는 심도 있는 결의와 판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약 1600여명의 총대들이 모이는 대형 회의에서는 고도의 통제된 질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결의와 판결이 심히 왜곡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중 가장 위험한 경우가 각종 결의와 아울러 법 집행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재판국의 판결문 보고 및 채택 과정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이다. 우선 회의를 이끌어 가는 의장 자신부터 시작해서 총대 그리고 집단적인 주장(소위 떼법)에 의해 실제적 진실에 대한 판단의 신중함과 여유도 없이 그리고 그 위에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얽혀진 상황에서 고퇴가 두드러 지는 경우이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 헌법질서의 남용과 왜곡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에 의한 불경건성



- ② 노회와 총회의 불법 및 탈법적이고도 탈정치적 결의로 법의 오용과 남용
- ③ 구조적으로 비대해진 총대의 수 및 각종위원회 그리고 비전문성
- ④ 교단구조의 삼권분리와 집행의 책임소재 비선명성 즉 역사상 가장 발전된 국가 및 사회구조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삼권분립에 대한 부적응 및 후진성(예) 적어도 노회와 총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책임 집행 기관이 독립적으로 상설화되어 상호 적절한 건설적인 견제가 실제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고유 영역의 목적과 권위가 실현되도록 현실화되어야 함.-이 부분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 ⑤ 유권해석 기관들의 법 해석 권위 불신 및 상실
- ⑥ 권한 없는 법 해석자들의 법 해석의 침해와 남용 및 그에 의한 법적용에 의한 헌법질서 파괴.
- ⑦ 교단의 결의와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불복과 항의의 수단으로 국가 사법기관의 의존도가 확대 됨. 이로 인한 교회법의 고유한 특징과 권위가 상실되고 교회법의 주도성을 내어 주게 됨.
- ⑧ 시대의 추세에 적합한 권징(조례)법 개정, 소송절차법 확립, 권위 있는 전문적인 법 해석의 기관인 헌법위원회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 함.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의 필요성과 운영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미 오랜 경험이 축적된 타 교단들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강의1 중 '타 교단 헌법위원회 비교 도표' 참조)

그러므로 이제 총회의 법 해석 유권 기관과 권한 없는 자들의 법 해석을 방지하면서 건전한 견제를 위한 권위 있고 전문적인 법 해석의 장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인 바, 헌법위원회의 상설기구화가 필요한 것이다.

4. 헌법위원회의 절대적 필요성

102회기 규칙부장 신현철 목사의 글을 보면 총회 유권해석의 한 기관 당사자로서 헌법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인용하면,

- ① 위헌적 정관 및 규칙, 규정으로 인한 헌법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② 총회 및 산하 기구들의 헌법위반 및 오남용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 ③ 교회재판과 사법재판의 판결이 다를 때 올바른 권징을 위해 필요하다.
- ④ 무분별한 자의적 헌법 해석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 ⑤ 헌법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 ⑥ 부당한 권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것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상설화가 필요하다.
- ⑦ 행정과 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와 같이 총회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법 해석의 유권기관의 당사자마저도 현금 우리 총회의 헌법위원회 설립 및 상설화를 깊이 있게 통감하여 연구를 하였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점에 있어서 정치부 또한 깊이 있게 공감하며 토론한 바가 있다.

5. 헌법위원회에 설치에 대한 우려와 해결책

헌법위원회가 옥상옥의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가 자세한 해답을 주리라 본다.

III. 맺음말

헌법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시에 그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몇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얼마든지 우려를 극복할 수 있고 총회의 법치주의가 실현되어 질서 있는 총회, 안정된 총회에 본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는바, 역사적인 결의가 될 것으로 보며 총대 여러분들의 깊은 통찰과 협력을 기대한다.(*).

※ 상기 내용은 총회의 공식 입장 및 본 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헌법위원회 설치의 당위성 및 유익

(이종석 목사 / 現 총회 정치부장)

I. 서언

지난 101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봉생 목사)와 기독교신문이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제101회 총대 1,517명을 대상으로 '총회 정책발전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대들의 민심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총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총회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5%(매우 1.5%, 다소 23.5%)에 불과했다. 73.5%(별로 54.5%, 전혀 19%)의 총대들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해 불만족 응답이 만족 응답에 비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회의 주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재판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 이들 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5%(매우 1.0%, 다소 24.1%)에 불과했다. 총회에 대한 만족도와 마찬가지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2.2%(별로 49.1%, 전혀 23.1%)로 나타났다.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헌법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공청회 시간이므로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교단 소속 목회자들을 비롯해 성도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법 감정과 정의의 원칙이 상실되어 버린 현실에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해야 할 치리회의 재판이 정치적 이윤이나 이해 관계, 심지어 물질적 유혹에 휘말리면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헌법위원회를 설치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헌법위원회는 또 하나의 옥상옥(屋上屋)은 아닐까? 문제는 법보다 그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여러 의문을 가지고 이 글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II. 본론

2.1. 헌법위원회의 필요성

1) 총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위원회가 필요하다.

지금도 우리 교단은 헌법을 해석할 권한을 갖는 기관이 있다.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은 물을 것도 없이 총회이다. 총회는 최고의 유권 해석 기관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총회는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며칠간만 열릴 뿐 총회는 곧 파하고 만다.

다음으로는 재판국이 있다. 재판국은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심사하여 판결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여기서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이 가장 요구되어지는 재판국의 판결이 때로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불러 오기도 한다. 왜일까? 법의 해석이 재판국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분쟁이 생긴다.

수증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간다.

또 다른 기관으로 정치부가 있다. 그러나 정치부는 상설기관이 아니다. 총회가 파하면 정치부도 사실상 할 일이 없다. 총회 시에 올라온 현의 안 중 정치부에 맡겨진 건에 대하여서만 해석한다.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또 다른 기관으로 규칙부가 있다. 규칙부는 헌법에 따라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심사하기 때문에 헌법 해석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 목사나 성도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서이기도 하다.

가끔 총회 임원회가 헌법을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맡겨준 사안 이외의 것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그렇다면 수시로 부닥치게 되어 있는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할 기관은 어디인가? 일일이 재판국에 소원이나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답답하다. 총회에 현의하면 총회가 열려야 답을 얻는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문제는 이미 끝이 나 버리고 만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이번 102회 총회 파회 후 총회 실행위원회와 고시부의 갈등을 보자. 고시부는 ‘법대로’를 주장한다. 실행위원회도 실행위의 결정을 이야기 하면서 법을 이야기 한다. 그런데 아직 평행선이다.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숫자가 많은 쪽이라고 이긴다면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다.

이런 때 헌법위원회가 있어서 명쾌하게 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다면 이런 갈등을 쉽게 풀어 갈수도 있을 것이다.

2) 법 해석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헌법위원회는 필요하다.

작금의 우리 교단 내에는 자칭 교회법 전문가들이 너무 많다. 물론 교회법에 대하여 많은 지식과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저들은 저마다의 법 해석을 통하여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다보니 법 해석의 통일성도 결여되어 있고, 법적 안정성도 흔들리고 만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은 법 해석의 유권적 권한이 없다. 유권 해석이란 말은 말 그대로 권한 있는 자의 해석이란 말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법 해석과 더불어 도움을 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들이 법을 잘 모르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권한을 가진 기관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위원회가 이런 부분을 채울 수 있고, 헌법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면 상당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3) 되돌릴 수 없는 권리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위원회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하여 되돌릴 수 없는 권리 침해에 이르게 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총회의 여러 선거에 출마 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그 때 후 잘못된 법 적용에 의하여 심의에 탈락하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이후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이미 선거는 끝나 버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때 헌법위원회가 있어서 정식으로 헌법위원회에 이 법의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절차나 기회가 있다면 부당하게 침해당할 뻔 했던 권리 침해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4) 헌법의 발전적 계승을 위해 헌법위원회가 필요하다.

법이라는 것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 개정이나 수정이 정말 어렵다. 예컨대 헌법 중에서 권징조례라는 것이 있다. 왜 권징조례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헌법에 조례라니?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을 말한다. 그냥 권징법 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권징조례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알 수가 없다. 헌법 개정위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보면 그 개정이 그리도 어려운가 보다. 그런 것을 보면 자연스러운 헌법의 발전적 기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헌법은 항상 발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신학 발전과 목회 현장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지금 우리의 헌법은 사실 너무나 단순하다. 소송의 절차가 일반 사회의 소송법에 비교하면 비교조차 불가할 정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행 세칙을 마련하는 일 등을 헌법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2.2. 헌법위원회 설립에 대한 우려와 해소 방안

1) 헌법에 따른 문제는 법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에 따르면 헌법위원회는 또 다른 권력기관처럼 행세할 우려가 있다.

이런 교권주의 적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위원은 그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지교회의 당회장이나 당회원, 그리고 소속 노회에서의 직무 외에는 총회내의 어떤 다른 직책도 맡을 수 없게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2) 부서 간 고유한 권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따르면 그 위험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정정부의 판단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다른 소리를 내거나,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법해석이 달라질 경우 부서 간 갈등을 넘어 총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법으로 세밀한 규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3) 헌법위원이 종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헌법위원회에 대한 견제장치 및 위원의 파면, 해임 등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그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III. 결 어

타 교단의 경우를 보면 헌법위원회를 가진 교단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 교단도 헌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거의 대부분 공감하리라 본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 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가 타 교단 헌법위원회에 대한 조사 및 분석뿐 아니라, 더욱 건설적인 제안들을 통해 최상의 헌법위원회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실 정치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헌법위원회 설립이 반가운 것일 수만은 없다. 정치부가 해야 할 일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총회의 발전을 위하여서라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총회의 발전적 미래상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 상기 내용은 총회의 공식 입장 및 본 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헌법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려 및 해결방안

(신현철 목사 / 現 총회 규칙부장)

I. 서론

최근 “한국교회는 소송 중”이라는 말이 있다. 교회 내의 수많은 사건들이 교단의 법적 질서를 벗어나 국가의 사법심사로 나아가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총회의 결의에 대해서조차도 이에 불복하고 사법에 호소하기도 한다. 이것은 교회의 권징질서의 파괴를 초래하며, 공교회가 참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몇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째는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움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한 성경의 가르침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듯싶다. 둘째는 교회, 혹은 교단의 권징에 공정성을 상실함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 법 감정 혹은 정의의 원리에 위반한 판결들이 나오고, 또 공정해야 할 권징재판이 다양한 이유로 왜곡,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교회의 권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권징재판에서는 이긴 자도, 진 자도 그 재판이 공정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에 이르렀다. 결국 불만을 가진 자는 국가의 사법심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하게 된 것이다. 셋째는 교회법의 부재, 혹은 미흡함과 다양한 법적 갈등을 해소할만한 기구나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서 갈등이 종식되지 못함도 한 원인이다. 쉽게 말하면 교회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고, 또 각각의 법적 기관들의 갈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조정해 주는 권위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적절한 법도 없고, 또 그런 기관도 없다. 그 결과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급기야는 국가법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의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는 국가법으로 완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고유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혹 판단이 있더라도 따르지 못할 일들도 수 없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하고, 완전한 해결은 교회법질서를 공고히 할 때만 가능하다. 헌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위험이 있다. 어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유용성도 있지만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위원회와 같은 법적 기구는 총회내의 새로운 권력기관으로 등장해서 교권세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헌법 질서의 심대한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필요성과 그것이 가져오게 될 권력오남용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기능은 살리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본다. 본고에서는 헌법위원회의 필요성과 그것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요건들을 살피고, 그것의 설치에 대한 우려 혹은 위험성을 점검한 후에, 각종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헌법위원회의 필요성

제101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허락되고, 제102회 총회에서 1회기 더 연장할 것을 허락했다. 이 때 헌법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던 이유는 헌법질서가 혼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보다 근본적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102회 총회에서 부결된 “정치부 상설화”²⁸⁾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 하나는 헌법위원회라는 기구 자체의 필요성과 그것의 상설화의 필요성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논하지 않으면 헌법위원회를 설치하는 자체가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2.1. 헌법위원회 설치(존재)의 필요성

우리 교단²⁹⁾은 헌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그 바탕 위에 다양한 정관, 규칙, 혹은 규정들을 두고, 그것들을 통해 법치질서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총회”를 헌법에 대한 유일한 유권해석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회 이외의 어떤 치리회 혹은 기관에서도 헌법에 대하여 임의로 해석할 수 없다. 물론 학문적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유권적 해석은 오직 최고 치리회인 “총회”만이 그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의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한다면 헌의안을 통해서 총회에 묻고, 총회는 결의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유권해석의 다양한 통로가 있다. 총회상설재판국의 재판을 통해서, 혹은 총회정치부의 헌법에 관한 헌의안에 대한 결의를 통해서 유권해석에 갈음하는 해석들이 나오곤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재판국의 판결도, 정치부의 결의도 결국은 총회 현장에서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유권해석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작금의 복잡한 교회와 법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고,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총회의 상비부인 정치부나, 규칙부, 재판국의 존재와는 별도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헌법위원회의 존재는 필요하다 하겠다.

2.1.1. 위헌적 정관 및 규칙, 규정으로 인한 헌법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최근에 교회 정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언론사나 법 전문가의 주장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실의 교회는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고, 그 때 정관을 잘 구축함으로 교회를 보존하는 일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교회정관들을 보면 그 정체성에 의심되는 일들이 많다.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이지만, 정관 내용은 교단의 헌법을 배제할 수 있는 조문들을 두기도 한다. 교단이 규정한 정년제를 떠나 다른 제도를 두고 있거나 목사의 위임해약과 관련해서도 지교회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교회를 보존하겠다는 명분으로 필요시에는 교단의 울타리에 있으면서도 불리할 때에는 언제든지 교단을 이탈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교단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임에 분명하다.

헌법 위반의 문제는 지교회 정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각 노회의 규칙, 심지어는 총회 규칙³⁰⁾은 비롯한 총회 산하 상설위원회, 산하기관, 심지어는 상비부의 규정들에서도 헌법위반의 내용들은 존재한다. 물론 총회 규칙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칙부의 직무에는 한계가 있다. 규칙부는 총회에서 위임한 것에 한해서만 제 규정을 심의할 수 있고, 또 규칙부의 관할범위를 벗어나는 각종 규정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총신사태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³¹⁾ 그 뿐 아니라 교단 내 제 규정이 상호 충돌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 때에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헌법의 원리를 따라 조정해주고, 또 헌법에 위반된 사항은 수정하게 함으로 헌법질서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헌법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2.1.2. 총회 및 총회 산하 기구들의 헌법위반 및 오남용으로 인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총회는 거룩한 기관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교단 산하 모든 노회, 지교회, 그리고 교인들은 총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회가 완전하나의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긍정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여전히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간들의 모임이고, 총회가 행하는 수많은 잘못과 실수를 보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회의 결의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으로 인한 심각한 권리침해도 발생한다. 아무런 문제 없는 목사가 총회의 그릇된 판단으로 면직되는 일도 있고, 불법을 조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총회가 그 결의를 통해서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어디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은 사법기관에 총회결의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권리를 보전 받으려 하게 된다. 이 때 총회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게 된다. 설사 총회가 승소하게 되었다 해도 그 거룩성에는 치명타를 입고, 부끄러움은 여전히 남는다.

총회의 결의나 권징재판의 위헌적 판단 때문에 권리 침해 받은 경우는 그래도 덜 억울하다. 왜냐하면 억울한 사정이 논의라도 되어 보았기 때문이다. 치리기관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하여 피해도 적지 않다. 즉 총회의 법 현실에서는 상소, 소원, 헌의안 등이 제대로 상정도 되지 못하고 기각되는 일이 허다하다. 가령 서기가 접수한 서류를 절차대로 처리하지도 않고, 반려하지도 않은 채 그것을 흘딩함으로 직무를 해태(懈怠)³²⁾하는 경우, 또는 헌의부에서 헌의안을 제멋대로 기각하는 경우 등이다. 이 때 발생하는 권리 침해 문제는 심각하다. 부전지 제도를 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기각 혹은 각하되기 십상이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들도 있다. 이것은 교단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제재하거나, 거기에서 침해된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총회 기구의 권력 오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은 그뿐이 아니다. 가령 총회임원회가 노회에서 제명 혹은 노회에서 탈퇴한 교회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교회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³³⁾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혹은 후보자자격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여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권력기관의 명백한 권력남용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 노회와 지교회의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 또한 총회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만다. 따라서 전문가로 구성된 헌법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있어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조정하고, 총회의 헌법위반이나 오남용으로 인한 침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면 헌법의 제 기능을 하게 되며, 교단에 대한 신뢰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1.3. 교회재판과 사법재판의 판결이 다를 때 올바른 권징을 위해 필요하다.

교회의 권징재판과 사법재판의 결과가 일치될 때에는 권징재판의 권위가 산다. 그러나 권징재판과 사법재판의 결과가 다르게 될 때는 심각하다. 그 때에는 총회는 신뢰를 잃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그런 사태가 많아지고 있다. 사법재판에서는 100전 100승인데, 교회권징재판에서는 완패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 사법재판에서 그렇게 많이 승소했는데도 교단 내에서는 아무런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변방인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사법재판

에서는 패소했는데, 교회 재판에서는 승소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이 때 어떤 판결을 따라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교회의 권징재판에서는 이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재판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법재판에서 이겼으니 총회재판의 결과를 따를 수도 없고, 사법재판의 결과를 따를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정치부나 재판부에서는 이런 것을 다룰 수 있지 않다. 여기에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따라야 하는지 혹은 총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교회법적, 법신학적 판단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법재판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고, 교회재판이라고 다 무능하고 비전문가의 판단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교회재판에는 법 이외에도 신학이라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2.1.4. 무분별한 자의적 헌법 해석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헌법은 최고의 법임에 분명하지만, 교회와 교단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할 수가 없다. 또 헌법에 규정된 조문들은 다양한 상황에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헌법을 해석없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의 발전 및 교회 상황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헌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목회자가 법에 대한 전문가일 수 없고, 법 해석은 다변적이고,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와 교단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헌법해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 헌법을 시행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교단 내에서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 법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총회는 헌법에 대한 해석을 주기는 하지만, 그 해석을 제공하는 시기가 즉각적이지 못하다. 당장에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합법적 절차를 알지 못하기에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은 교단은 물론 노회와 지교회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교단적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 법 집행이 어려운 가운데, 흔히 나름대로 법에 대해서 식견이 있다는 분들에게 헌법에 대한 사적 해석을 구하게 되고, 몇몇 기독교 언론사들의 주장이 마치 유권해석인양 둔갑하게 되므로 무분별하게 자의적 헌법해석이 난립하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총회의 헌법에 대한 해석보다 특정 언론사나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사적 해석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게 하기도 한다. 이는 총회적 차원에서의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작금의 형태를 볼 때 헌법에 대한 사적 해석이 만연하는 것을 막고, 헌법에 대한 바르고 정당한 유권해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헌법위원회는 그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하므로 사적 해석이 아닌 교단 차원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하여 합헌적으로 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2.1.5. 헌법 질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법은 시대의 소산이며, 시대의 반영이다. 따라서 그것이 고착화되면 법은 오히려 거대한 족쇄가 되고 만다. 법은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목회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개혁신학이 주장하는 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는 말과 같이 법 역시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거나 목회현실, 교단의 헌법적 질서를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교단의 헌법은 지나치게 옛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일대 혁신이 필요하며, 개혁신학의 정신을 더욱 고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법적 지식이나 신학적 소양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 내의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상황도 매우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회의 헌법은 그 자체에서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의 헌법에 관한 다양한 유권해석이 축적되어야 하며, 또 법신학(Rechtstheologie)³⁴⁾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정치철학, 교회법적 절차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회법 전문가는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정치철학자, 그리고 개혁신학자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

현재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법을 연구하는 변변한 기관 하나 없다. 신학교에서 교회법, 혹은 법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이 있으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일 것이다. 그리고 교단적 차원에서 헌법을 연구하며, 그것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료를 제시하며, 축적함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부에서 사안에 따른 헌법 해석을 내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헌법을 연구하고, 보다 탁월한 헌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위해서 전문적 헌법기관이 필요하다. 헌법위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 교단의 헌법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2. 헌법위원회 상설화의 필요성

이상에서 설명한 것 이외에도 헌법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꼭 상설화되어야 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헌의안을 통해서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가 그 가운데 헌법과 관련된 특정 사항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맡기면, 그 해석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라도 헌법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안에 따라 신속하게 헌법적 문제나 분쟁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상설화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2.2.1. 헌법적 권리 침해는 잠시도 방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가 상설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의 권력기관을 통해서 권리를 침해 받게 되거나, 혹은 총회 규칙 등 제 규정의 위헌적 조문 때문에 권리를 침해 받게 된 경우에는 총회에 헌의하거나 혹은 재판국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일정기간 동안에 권리 침해의 상태가 계속 유지됨을 의미하며, 헌법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게 되더라도 권리가 침해된 기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위헌적인 방법으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잠시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고, 침해상태가 유지되게 해서 안 된다. 위헌임이 확인된다면 즉시 침해된 권리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헌법위원회가 상설화되지 않는다면, 일정기간 동안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피할 수 없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질 경우 갈등과 상처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헌법의 정신과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히는 것이 된다.

권리의 침해 가운데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한 번 발생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있다. 가령 담임목사가 면직이 되어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후임목사가 청빙 되어 위임식까지 마치게 되었다고 한다면, 담임목사의 면직된 사유가 위헌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그 면직의 판결이 무효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면, 신분과 지위를 회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받은 권리 침해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자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권리를 침해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그 권리를 구제해 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 부당하게 후보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물론 다른 형태로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은 받을 수 있겠지만, 본래의 권리는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헌법의 오남용으로 인한 권리침해는 발생하지 않게 함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적용이 처음부터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권리침해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이것은 결국 교회 문제를 가지고 국가의 사법당국에서 다루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며, 교회의 치리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상설화는 매우 요긴하다고 하겠다.

2.2.2. 행정과 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비상설화 상태의 헌법위원회는 교단의 법행정 일반에 관하여 시간을 지연하지 않을 수 없다. 비상설화의 기본은 최고 처리기관이 총회로부터 수입받는 사항에 관해서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 파회 후에도 끊임없이 법행정은 이루어지고, 또 총회 산하 각 기구간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총회로부터 수입된 사항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총회의 일반행정의 통일성을 기할 수 없게 만든다. 이번 총회실행위원회와 고시부가 상반된 결정을 함으로 갈등이 커지게 된 것도 그 한 예라고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이런 갈등을 합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총회 파회 후에도 즉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헌법위원회가 상설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법의 사적 해석이 난무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임의적 법 집행은 당연한 귀결이다. 즉 이것은 총회의 행정과 치리에 있어서 유권해석에 기초한 합법적인 진행을 저해하고, 그것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낳을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헌법위원회가 상설화 되어 있으면 특수한 사정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구할 수 있게 되고,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행정과 치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위헌적 진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총회의 수입과는 별도로 교단 산하 기구의 행정과 치리에 있어서 헌법 관련 문제에 즉시 유권해석을 내리므로 사전에 갈등을 종결시킬 수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헌법위원회의 상설화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2.2.3. 치리와 권징의 절차적 합법성과 교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권징의 정당한 시행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들고 있다. 또한 그것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보지는 않은 분들조차도 권징의 중요성은 인정했다. 권징은 교회의 일어서고 무너짐의 중요한 순간이 된다.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교회는 영적 권위마저 잃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외면 당하고 말뿐이다.

작금의 교회는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교회의 결의나 재판이 정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결의나 교회 재판은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일 때가 많고, 적절한 제재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결국 교회의 결의나 재판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교회의 권위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교회재판에서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국가의 사법심판에 의지해서 자신의 권리구제를 받으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회 헌법에 대한 바른 해석을 토대로 한 교회의 결의나 권징재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총회의 결의, 재판국의 판결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기구가 있어서 언제든지 그것에 대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교회의 결의나 판결은 합법적 절차를 따르게 되고, 또 헌법위원회의 견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정당성을 잃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것은 총회의 결의나 재판국의 판결 등이 헌법적 절차를 따라 정당하게 판단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교회의 치리와 권징은 그 권위를 갖게 될 것이고, 국가의 사법심사에서도 승소함으로써 교회적 판단의 정당함을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은 매우 요긴하고, 필수적이라 하겠다.

III. 헌법위원회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기본 요건

헌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된 헌법위원회가 아무런 권능이 없는 식물기구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고, 교권주의자들의 어용기구가 될 수도 있다. 이는 교단의 중요한 재원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법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헌법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3.1. 상설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총회헌법위원회가 상설기구로서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지키겠다는 헌법위원회가 불법적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헌법에 헌법위원회의 설치와 직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총회 규칙을 통해서 헌법위원회의 설치를 명문화 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위원회 조직 규정 및 시행세칙을 통해서 헌법위원회의 조직 및 직무, 운영방안 등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상설기구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헌법적으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헌법은 교권주의가 자리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총회와 총회 산하기구에 대하여 파회 정신을 담고 있다. 즉 총회는 파회와 함께 소멸되고, 총회가 위임한 사항에 한해서 상비부, 기타 기관 등이 수입사항을 시행하는 것뿐이다. 어떤 기관도 총회에서 수입한 사항 이외에는 어떤 것도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위원회가 상설기구로서 총회의 수입 없이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규정한 파회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헌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헌법위원회가 상설기구로서 활동하게 된다면 이것은 자체로 위헌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헌법위원회를 헌법적 상설기구로 하는 헌법개정은 필수적이다. 이 때 헌법에는 헌법위원회의 구성, 헌법위원회의 직무, 헌법위원회의 상설 및 결의의 효력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적 기구임과 동시에 총회적 기구이다. 헌법을 통해 그 상설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동시에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총회 규칙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즉 총회 규칙의 총회 상설 위원회 내에 헌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 헌법위원회의 직무, 헌법위원의 자격, 헌법위원의 선임방법, 헌법위원의 해임에 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총회 규칙과는 별도로 헌법위원회 규정 및 시행세칙을 만들어 헌법위원회의 운용에 관해서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또한 헌법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헌법위원 선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3.2. 헌법위원회와 그 위원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위원회가 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위원회와 각 위원들에 대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즉 헌법위원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어떤 법의 위반이 없는 한 그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헌법위원회를 임의로 지휘, 감독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의 압력을 받아 헌법적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헌법위원회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게 되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 교단 전체에 큰 화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위원회와 각 헌법위원의 독립성을 보장함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개별 헌법위원은 다른 헌법위원에게서도 압력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각각의 헌법위원은 신앙양심에 따라 각각의 의견을 모두 개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가령 헌법 해석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때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라 판단하게 되지만, 결의문에는 각각 위원들의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모두 소개되게 함으로 소수의 의견조차 외면되지 않게 해야 하며,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총회 규칙, 혹은 헌법위원회 규정을 통해서 헌법위원에 대하여 압력을 행사할 수 없게 규정하고, 헌법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해서는 신문기사, 혹은 신문광고 등에 의견을 게재하거나, 성명서 등도 낼 수 없게 해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그런 내용의 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다만 헌법위원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그것에 판단할 수 있게 하되, 헌법위원이 섬기는 교회 앞에서 시위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해당자에 대해서는 정직, 혹은 수찬 정지케 할 수 있게 하고, 신문사 등이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총회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총회임원회는 이를 시행하게 해야 한다.

헌법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 소송에 대해서는 총회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헌법위원에 대하여 외압을 가하거나, 부당한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교단적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처럼 헌법위원회나 헌법위원에 대한 신분의 보장과 독립성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헌법위원회가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3.3. 헌법위원회의 판결 혹은 결정의 효력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예심판결이라고 한다. 즉 그 판결은 유보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회 현장에서 재판국의 판결은 반복되는 예가 허다하다. 아마도 재판국이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일 것이고, 총회의 교단 최고의결기구로서의 권위를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교단의 법질서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허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재판국은 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법적 판단을 하게 되지만, 총회는 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총대들이 신문기사나 소문에 의지하여 감정적 판단을 하게 되기 쉽고, 이것은 법적 판결이 아닌 여론 재판으로 전락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총회재판국은 법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해석이나 판단보다는 정치적, 실리적 판단을 하게 되는 예가 허다하고, 총대들의 법 감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확정 판결이 되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총회재판국도 법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그 판결 자체를 확정 판결이 되게 하는 법 개정은 필요하리라 본다.

헌법위원회는 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법적 판단을 하는 기구이다. 그리고 이것은 법 해석의 오남용으로 인한, 혹은 위헌적 결의에 의한 권리침해를 구제해야 하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시급한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헌법적 유권해석을 내려줌으로 법질서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 그런데 헌법위원회의 결의나 해석, 판단, 처분, 판결이 유권적이 되지 못하고, 예심판결, 혹은 유보적인 판단, 권고적인 처분 정도에 머물게 된다면 헌법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히려 헌법질서에 혼란을 가중케 할 뿐이다.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하여 그 결정이 선고되는 순간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함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헌법적 상설기구로서 제 기능을 다하게 된다.

3.4. 헌법위원회의 설치 및 시행을 위한 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총회 규칙에 각각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헌법 개정의 절차는 총회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총회 현장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각 노회에 수의를 거쳐 다음 총회에서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밟고 난 후에 헌법위원회를 발족하려고 한다면 짧게는 2년, 길게는 3~4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는 헌법위원회의 출범 자체를 늦추는 것일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자칫 헌법위원회의 기본정신을 변질시킬 수도 있다. 또한 그 동안에 일어나는 헌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출범시간만을 연장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급적 빨리 시행될 수 있게 함이 옳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설치에는 헌법과 총회 규칙의 개정, 그리고 헌법위원회 규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헌법위원회는 불법적 기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고, 헌법위원회를 신속히 가동하기 위해서는 헌법위원회 준비위원회가 헌법개정안과 총회 규칙 개정안, 그리고 헌법위원회 규정을 미리 마련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가 헌법개정안과 규칙개정안을 통과하면, 헌법개정안이 노회에 수의되는 기간을 한정해서 기존헌법을 잠재하고, 개정된 총회규칙에 따라 헌법위원회를 설치 시행할 수 있도록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결의를 하게 되면 헌법개정안 노회 수의까지 합법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이러한 특별결의가 없으면 헌법위원회는 노회 수의 결과를 기다려야 비로소 시행할 수 있게 된다.

IV. 헌법위원회 설치에 대한 우려

헌법위원회는 헌법적 상설기구로서의 권한을 갖게 된다. 이것은 자칫 총회의 권위와 맞먹는 것으로, 때로는 총회의 권위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유 때문에 헌법위원회의 필요하기는 하지만, 장로회주의가 추구하는 바를 외면한 채, 교권주의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헌법위원회도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이 헌법위원회를 장악하고 부당한 권력을 남용하며, 교단의 법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 즉 헌법위원회는 유익이 큰 만큼 위험도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위원회의 변질되면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은 유익할 것이다.

4.1. 부서간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의 우려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서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구는 총회이다. 총회 규칙에 의하면 헌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참여하는 부서로는 정치부, 규칙부, 재판국이 있다. 정치부는 총회에 상정된 헌법사항에 관해서 살피고, 그 판단을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정치부의 보고에 따라 헌법적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규칙부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다양한 규칙과 규정들을 제시하며, 헌법적 사항에 구체적으로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그 때에도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결과를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가 최종 결의한다. 재판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총회재판국은 재판건에 대하여 판결을 통해 헌법을 해석 적용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는 재판국의 보고를 근거로 그 재판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함으로써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확정한다. 헌법과 관련해서 이처럼 다양한 상비부가 제 역할을 하고, 총회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결국 총회가 헌법해석에 유일한 권한을 갖게 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위원회는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또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이는 기존의 헌법에 대한 해석권이 총회에만 있던 것과는 달리, 헌법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대폭 헌법위원회로 이양하는 격이 된다. 보기에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그 자체로 헌법에 대한 유일한 해석권을 가진 총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때로는 총회의 헌법 해석과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이 다를 수 있고, 재판국의 헌법해석과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헌법위원회가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빌미로 각 상비부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헌법적 갈등을 불러오며, 교단의 법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총회를 진흙탕 싸움판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 따라서 헌법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사전에 그 위험성을 제거해야 한다.

4.2. 교권주의자의 용인과 권력 오남용의 우려

교권주의라 함은 특정한 사람, 혹은 단체가 교단의 모든 권한을 부여 받아 교단의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독재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령 로마교회의 교황 정치가 한 예라고 하겠다. 장로교회는 이러한 정치가 교회의 부패를 불러왔다고 판단하여 철저하게 대의적 민주정치를 추구해 왔다. 이는 신학적으로 모든 권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정신이 장로회정치로 구현된 것이다. 그래서 헌법은 파회(罷會)와 함께 총회를 소멸케 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지속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파회 후에 총회가 소멸되게 함으로 교단의 무질서와 비효율을 초래했다. 일부 교단에서는 장로회주의의 이러한 폐단을 인식하고, 총회를 상설화하는 예도 있다. 현실적으로 총회가 파회했다고 해서 총회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총회임원회가 이를 대신하여 기능적으로 총회적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파회 정신을 빌미로 총회임원회는 총회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상설기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권주의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총회가 유일한 헌법해석과 적용의 기구였다면, 파회 정신 때문에 총회 임원회가 아무런 견제 없이 마치 유일한 헌법해석 및 적용의 기구인양 행세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상설기구가 된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이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구라고 할 때 교단이 교권주의적 체계로 변질되는 것을 헌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칫 이것이 장로회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하며, 교황정치로 회귀하게 될 수도 있고, 교단 최고의 법인 헌법에 대한 해석권 한을 쥐고 있는 헌법위원회는 총회 산하 각 부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과도한 권력을 갖게 되고, 권력을 오남용하게 되는 더욱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위원회가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헌법해석을 하게 되면 총회의 기능을 크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옥상옥이 되거나, 어떤 기관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교단의 정치꾼들이 총회를 장악하는 도구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법위원회의 부패는 분명코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총회의 정당한 판단을 왜곡시킬 것이다. 헌법해석의 권한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통해 교단을 파국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사료된다.

V. 각종 우려의 해소방안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은 기존의 장로회 정치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개혁신학에 입각한 새로운 발전을 위해 중요한 통찰을 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과 교회의 유일한 주권자이다. 그리고 인간은 각각의 영역에서 제한된 주권을 행사하며, 각각의 영역은 서로 견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특정한 권력집단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는 신성모독을 범하게 되기 때문이고, 건강한 교회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위원회가 독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각 부서가 협력하되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5.1. 헌법 위원의 겸직 금지 및 중립성 유지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대한 공정한 해석과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헌법위원회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사적 감정에 의해 왜곡된 해석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한쪽으로 경도된 해석이나 진영논리에 빠진 해석을 내놓게 되면 헌법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헌법위원회 자체 내에서 상호 견제하는 기능이 있게 되어 왜곡된 판단이나 해석을 내놓지 않게 된다.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지역의 인사로 편중되지 않게 해야 한다. 가령 한 노회에서 1명만 헌법위원이 될 수 있게 하고, 현재 3개 구도를 활용하여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장로회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목사와 장로를 동수로 하는 것도 중립성을 담보함에 요긴한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로 헌법위원을 선임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인에게 임명권을 주기보다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후보를 놓고 총회 현장에서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재판국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로 헌법위원은 총회의 임원, 상비부 임원, 정치부나 규칙부, 혹은 재판국의 상비부원, 산하기관의 임원 혹은 각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고, 오직 헌법위원회 위원만 되도록 해야 한다. 즉 헌법위원은 지교회의 당회장이나 당회원, 또는 소속 노회에서 직무 외에 정치부, 규칙부, 재판국을 제외한 상비부의 부원이 되는 외에는 어떤 직분도 겸직할 수 없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

라 신문사의 기자나 기타 교단적 차원에서 특정 이익집단, 혹은 그 이익에 관계된 자³⁵⁾는 헌법 위원이 될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래야 중립성을 유지하며, 헌법위원회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으며,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5.2. 헌법위원의 전문성을 강조한 자격 요건

헌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위원의 전문성이다. 헌법위원은 법과 신학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한다. 통상적인 수준의 법 지식이나 신학적 소양으로는 헌법위원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다. 적어도 법 원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교단의 정치 원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법적 논리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할 능력은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법학 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총회 총대 경력이 5회 이상인 자, 또는 총회 상비부 중 정치부, 규칙부의 임원 경력이나 재판국원의 경력이 있는 자, 교회법은 법과 신학에 관한 부분에 충분한 소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법학, 교회법, 또는 신학관련 박사학위 소지자³⁶⁾, 변호사, 법무사,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이어야 한다. 이처럼 그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법과 신학에 대하여 전혀 소양이 없는 사람이 헌법위원이 되면 헌법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헌법위원에게는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연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그 연임이 새로운 기득권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나 적어도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은 헌법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교단 내에 교회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차제에 교단의 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교회법전문대학원이나 교단의 법전문인양성기관이 세우는 것은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헌법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총대 아닌 자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이다. 교단 내에 교회법과 신학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총대들 중에는 더더욱 흔치 않기 때문에 헌법위원의 전문성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이들을 통해 법적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보다 더 전문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위원들을 통해 헌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전문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전문위원에게는 결의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들은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만 하게 함이 옳다.

5.3. 헌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제한

헌법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가장 우려되는 바는 헌법위원회가 교단 정치에 최고권력기구로 작용하여 교권주의의 온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교단 총회가 최고의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고, 오히려 헌법위원회에 예측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것은 총회의 거룩한 질서가 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그 권능에 대한 제한과 한계를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5.3.1. 직무 내용을 구체화하여 각 치리회와 부서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게 함.

헌법위원회의 권능을 제한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총회의 각 상비부의 고유한 영역과의 상관관계이다. 총회는 헌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정치부, 규칙부, 재판국을 설치하고 있다. 정치부는 헌법의 해석, 갈등에 대한 정치적 조정 기능 등을 핵심으로 한다. 규



직부는 총회 헌법과 총회규칙을 기준으로 총회 산하 모든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입법활동을 살피고, 적절한 시행을 살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재판국은 총회 산하 각 치리회에서 일어나 소송 및 소원에 대하여 헌법과 규칙에 따라 판결함으로써 헌법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위원회 역시 이들 상비부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교회법을 다루는 기관이 될 것이다. 이는 관련 상비부와 충돌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각 상비부서의 고유한 영역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게 제한해 두어야 한다. 즉 헌법위원회의 고유한 직무를 구체화함으로써 다른 부서와의 충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총회의 결의, 혹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는 그것의 위헌성 여부만을 판단하게 해야 한다. 즉 헌법적 소원만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정치부 사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전에 헌법위원회에서 총회 결의에 간여하거나 재판 과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총회 규칙이나 규정 등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도 헌법위원회는 각 조문의 위헌성 여부만을 판단하게 해야 한다. 규칙부는 총회 규칙 뿐 아니라 산하 기구의 제 규정을 심의하여 처리한다. 그런데 헌법위원회에 그 과정에 간여하여 규칙부의 고유한 영역을 침해할 수는 없다. 헌법위원회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것의 위헌성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위원회는 법으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헌법위원회가 다른 상비부의 고유한 영역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5.3.2. 권한 있는 자의 소원이나 질의 또는 요청에 대해서만 판단함

총회헌법위원회가 아무 사안이나 임의로 판단하게 된다면 전체 교단의 법질서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헌법위원회는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사안, 혹은 각종 규정 등에 대하여 판단하되, 해당 사건에 대한 당사자만이 헌법 소원이나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때 헌법위원회의 독립성을 이유로, 헌법 위원회 서기에게 즉시 접수할 수 있게 하고, 헌법위원회는 여기에 대하여 판결,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아무런 요구가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게 해야 한다.

가령 총회 산하 각 치리회, 혹은 기관에서 그 본래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헌법적 판단을 필요로 할 경우에, 해당 기관에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적 의문, 혹은 진행 중인 재판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국 이외의 어느 당사자도 헌법위원회에 판단을 요구할 수 없고, 또 그럴 경우에는 헌법위원회는 반드시 각하 처리하게 해야 한다. 즉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가 판단해서는 안되고, 치리회나 총회 산하기관이 그 행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헌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문을 통해 질의하며, 그것에 대하여만 헌법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각 부서간의 권한 분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양 당사자 중 일방이 헌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헌법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게 하고, 판결, 처분, 결의 또는 제 규정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가에 대하여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판단하게 한다. 그 외의 당사자의 요청이 없거나, 제3자가 요청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당사자의 요청이 없을지라도 총회가 수입한 안전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한다.

5.3.3.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게 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권징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기관이 헌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헌법위원회는 판단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는 각 치리회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각 치리회로 하여금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없게 할 수 있고, 헌법위원회가 권능을 남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재판국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하여 비록 관련자들이 헌법적 판단을 요구하더라도 헌법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재판국의 판결이 끝났을 때에는 그 판결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 여부에 관해서 당사자가 헌법위원회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 한해서 헌법위원회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총회 서기 등이 현의안에 대하여 그 처리를 해태(懈怠)함으로 발생하는 문제³⁷)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후보자의 자격에 대한 심의를 해태하게 될 때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헌법위원회에 판단을 구할 수 없게 한다면 회복 불능의 권리 침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총회의 기관이 그 직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나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판단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하겠다.

5.4. 헌법위원회 결의 요건의 강화

헌법위원회가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헌법위원회가 총회의 결의나 재판국의 판결을 쉽게 번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위원회 결의 요건을 강화하면 된다. 적어도 총회 결의가 위헌이라고 하여 재결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권징재판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재심 판결하려면 헌법위원회 재적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게 하면 된다. 헌법위원이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정도라고 한다면 총회 결의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음이 명백할 것이고, 또 재판국의 판결에도 그러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반수 정도의 찬성으로는 그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기 쉽지 않다. 이는 오히려 헌법위원회와 총회, 혹은 재판국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되고 말 뿐이다.

또한 총회 규칙이나 기타 총회 산하 기구의 규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위헌적이므로 그 규정을 폐지 혹은 수정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그러나 재적 3분의 2이상이 각 규정에 대하여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규정의 위헌성이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헌법위원회가 총회 규칙이나 제 규정에 대하여 임의로 재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처리기관이나 총회 산하기구가 행정적, 혹은 권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그것에 대하여 질의하게 된 경우에는 헌법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유권해석을 결정짓게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며, 유권해석을 통해 법질서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헌법위원회의 결의 요건을 어렵게 하면 헌법위원회가 자의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고, 권력을 오남용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5.5. 헌법위원회에 대한 견제장치의 마련

헌법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의 과정에 있어서 견제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그러나 견제장치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다른 견제기구를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옥상옥



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가 헌법위원회의 견제 장치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총회는 교단의 최고 의결기관이므로 그 의결과정을 통해서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자칫 헌법위원회의 전문적인 영역을 다수의 정치적 선동에 의해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총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품위유지 및 의무규정³⁸⁾을 명확하게 하여 개별 헌법위원이 그것을 위반하게 된 경우, 또는 헌법위원이나 헌법위원회가 권력을 오남용하게 될 경우에 총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위원회의 해산, 또는 헌법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게 하게 된다면, 또는 총회 총무 해임에 준하여³⁹⁾ 헌법위원회의 해산, 또는 헌법위원을 해임할 수 있게 한다면 헌법위원회의 위법한 독주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절차들을 갖추게 되면 헌법위원회가 총회에 유익한 권력기관으로 설수 있고, 교권주의적 폐해가 되는 길은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나 헌법위원에 대한 감정적 해임은 헌법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위원회의 월권이나 권력의 오남용, 혹은 불법한 행위 등이 있지 않고는 해임을 요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VI. 결론

헌법위원회 설치의 양날의 검이다. 이것은 매우 요긴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매우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잘 사용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좋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이처럼 위험한 것도 없다. 그러면 위험하니 설치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좋은 점을 잘 살리고,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그 위험성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이미 우리의 법 현실은 매우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총회 시스템만으로는 모든 것을 망라할 수 없고, 효율적인 법적 대응을 이루어낼 수 없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파회정신을 고수하게 된다면 타이밍을 놓치는 일들이 허다하며, 회생 불가능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총회 헌법위원회의 설치하는 현실적으로 매우 요긴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요긴함만큼이나 헌법위원회는 교권주의로 전락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위원회가 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권력의 오용이나 남용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그것만 잘 갖추어지게 된다면 헌법위원회는 교단의 헌법발전에도 매우 유용한 기구가 될 것이다. 기능적으로 그 효력을 극대화 시키고, 오남용의 문제를 철저히 제한하는 구조를 갖추기만 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 총회헌법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성을 갖추고, 중립성을 유지하며, 독립성을 보장하게 하며, 다양한 역할에 대한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며, 절차를 통해 권력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헌법위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파면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히 마련하기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부디 교단의 거룩한 질서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헌법위원회의 설치가 이를 위한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 상기 내용은 총회의 공식 입장 및 본 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8) 정치부 상설화는 제101회 총회에서 총회기구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총회규칙부가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효율성이 있지만, 헌법의 파회 정신에 맞지 않고, 정치부에 의한 권력남용의 여지가 있고, 교권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과 장로회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제102회 총회에서 반대의결은 제시했고, 총회는 규칙부의 의견을 받아들여므로 폐지된 것이다.

- 29)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
- 30)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 10)에서는 고시부는 총회가 인준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 후보생의 강도사 자격 고시를 행하며 고시할 날짜는 매년 6월중으로 하되 단, 군종장교 후보생은 2월중으로 하며 제98회 총회가 결의한(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목후보생 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총회소속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해에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하고 합격 후 봄 노회시 군목으로 안수하되 축도권은 임관시 부여하기로 하다) 군목안수제도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 헌법은 정치 제4장 제2조에서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인 자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총회규칙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총회소속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해에 군목후보생의 나이는 불과 24세이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줄 수 있게 하고 있다. 군목은 27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교단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 31) 재단이사회가 법인정관을 개정하면서 총회의 지도를 받을 것과 재단이사의 구성이 본교단 소속 목사 혹은 장로이어야 함을 제거한 것.
- 32) 직무의 해태란 권한 기관이 자신이 진행해야 하는 직무를 중지한 채, 처리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는 경우를 뜻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권리 침해가 낳을 수 있고, 그 때에는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
- 33) 교회소속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행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재판에서 교회의 재산권이 송두리째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교회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함부로 그런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권력의 오용이다.
- 34) 법신학이란 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학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법철학은 법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법의 근본적 문제는 궁극적으로 신학과 맞아있다는 생각이 법신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다. 특히 교회법은 교회의 질서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법으로 반영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법신학적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 35) 자신의 수익을 목적으로 헌법적 판단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 36) 신학관련 박사학위소지자는 교회법은 철저하게 신학적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법적인 측면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명확하게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 37) 총회서기 등 경우 부서에서 접수한 현의안이나 재판건, 혹은 입후보자의 자격 심의를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시일만 경과케 하는 등의 직무를 해태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록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에 합당한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직무 해태하여 사실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꿈을 부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38) 대한민국 정부는 부패방지법, 공무원윤리강령,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것으로 공무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위원회의 규정 안에 그와 같은 직무상 혹은 신분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합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이 필요하다 하겠다.
- 39) 총회 규칙 제3장 제12조 5항 참조



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최종 보고

1. 제102회 총회 수임사항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회 위원장 정진모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39~844쪽)대로 받고, 1년 연장 청원(청원 내용: “상기 본 위원회의 최종 결과 보고에서와 같이 헌법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 사료되는바, 헌법위원회의 설립과 관련법 개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법위원회의 설립 준비를 위하여 본 위원회의 한 회기 연장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처리 내용 및 최종 결론

제101, 제102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연구 및 준비케 함에 따라 헌법위원회의 설치는 1)헌법 질서의 확립, 2)헌법적 권리 구제, 3)법적 낭비의 축소 4)헌법의 효율적 적용 및 발전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였기에 헌법위원회의 합법적 설치를 위하여 헌법 개정안과 총회규칙 개정안, 그리고 헌법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연구 제안합니다. 따라서 헌법위원회 설립을 위한 적절한 법적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청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재정부장

제목 : 헌법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관련 법안 개정 청원 및 위원회 1년 연장 청원

제102회 총회가 본 위원회의 청원(내용: 상기 본 위원회의 최종 결과 보고에서와 같이 헌법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 사료되는바, 헌법위원회의 설립과 관련법 개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법위원회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본 위원회의 한 회기 연장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 허락 결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청원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헌법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청원

1) 총회헌법(정치, 권징조례)개정 청원(안)

(1) 헌법 정치 개정안 (신설 삽입)

제12장 총회

제5조 총회의 권한

7. 총회는 헌법의 연구 및 해석, 헌법 문제에 대한 심의, 결정, 그리고 헌법개정안의 제안을 위하여 헌법적 상설기구로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고, 총회에서 선임한 9인(목사 5인, 장로 4인)의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임을 담당하게 한다.

8. 헌법위원회의 법리 판단(결정, 해석, 답변 등)은 헌법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이 되나, 다만 총회가 총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헌법위원회의 법리 판단을 거부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가 헌법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이 되며, 이에 대해서 헌법위원회는 재론할 수 없다.

(2) 헌법 권징조례 개정안 (수정 및 보완 삽입)

제70조의 1 (재심청구)

헌법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리 판단이 재판국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는 관할 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법리판단에 합당하게 재심 판결해야 한다.

제70조의 2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2) 총회규칙 개정(안)

현행	수정안	비고
<p>제2장 제7조 2)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p>	<p>제2장 제7조 2)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하되,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에는 이를 15일 이내에 헌의부로 이첩하고, <u>헌법위원회로 보내지는 모든 서류의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헌법위원회 서기에게 이첩하여야 한다.</u></p>	수정
<p>제11조 (위원회)</p>	<p>제11조 (위원회) 1. 헌법위원회 1) 조직 (1) 헌법위원회는 총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2) 헌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3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헌법위원은 총회 임원을 비롯한 총회 산하 각 부서(위원회, 총회소속기관 포함)의 임원, 재판국원, 감사부원, 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2) 임무 (1) 총회규칙 및 총회 산하 부서의 제 규정(노회, 교회의 정관 포함) 각급 치리회의 결의 또는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2)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을 판단한다. (3) 총회산하 각 기관이 질의한 헌법관련 문제에 대하여 답변한다. (4) 총회재판과 사법재판의 판결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헌법에 타당한 지침을 제시한다. (5) 기타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며, 헌법개정안을 제안한다. 3) 위원의 선임 (1) 헌법위원회는 헌법위원 후보자를 3배수로 공천하며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자격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총회임원회에서 선임한 임원 2인(목사, 장로 각 1인), 유관부서(정치부, 규칙부, 재판국)에서 선임한 부원 각 1인씩으로 구성된 5인의</p>	삽입

	<p>헌법위원 공천소위원회가 헌법위원회에서 공천한 후보자들 중에서 배수로 후보자를 확정한다.</p> <p>(3) 총회는 최종 후보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투표하여 선출하며,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p> <p>4) 해임</p> <p>(1) 총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바 헌법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위원회, 또는 총회 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본회(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p> <p>(2) 헌법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헌의안은 총회 정치부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본회에 상정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기각해야 한다.</p> <p>(3) 헌법위원에 대한 해임요구안이 결의된 때로부터 해당 위원의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된다.</p> <p>(4) 위의 (1)과 (2)의 경우, 본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되, 총회 과반수의 출석과 유효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즉시 해임된다.</p>	
<p>제11조 1. 실행위원회</p>	<p>제11조 2. 실행위원회</p>	<p>수정</p>
<p>제7장 제25조(회원권제한) 총회의 결의를 순복치 않는 자는 본회의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다. 단, 본회에서만 가결할 수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한다.</p>	<p>제7장 제25조(총회의 결의)</p> <p>1. <u>총회의 결의는 최고 치리회의 결의이므로 총회 산하 모든 치리회, 기관, 개인은 복종해야 한다.</u></p> <p>2. 총회는 그 결의에 순복치 않은 자에 대하여 관할 치리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본회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다. 단, 본회에서만 가결할 수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한다.</p> <p>3. <u>헌법위원회의 결정 혹은 법리 판단이 총회의 결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결의에 관계된 당사자는 총회에 재 결의를 요구할 수 있고, 총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헌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헌법위원회의 법리판단에 합당하게 재 결의하여야 한다.</u></p>	<p>삽입</p> <p>삽입</p>



3) 총회헌법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총회헌법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헌법에 관한 연구, 해석, 판단을 통하여 교단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위) 본 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헌법개정안) 및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규칙 개정안)에 의거 총회 소속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제4조(주요 활동)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1. 총회 규칙을 비롯한 총회 산하 제 규정(각 치리회의 정관 포함)의 위헌 여부의 결정
2. 총회(소속 치리회 포함) 및 총회 소속 기구들의 결의에 대한 위헌 여부의 결정
3. 치리권의 오남용을 통한 헌법적 권리 침해에 따른 헌법 소원에 대한 판단
4. 권한 있는 자(청원권자 포함)의 헌법에 대한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적 답변
5. 교회재판과 사법재판의 판결이 다를 때, 헌법적 입장에 대한 결정
6. 헌법과 교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헌법 개정안의 상정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본 위원회는 본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9인(목사 5인, 장로 4인)으로 구성한다. 단, 총대자격을 상실하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자격) 헌법위원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총회 총대 5회 이상인 자
2. 신학분야 혹은 법학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총회 총대 3회 이상인 자
3. 변호사로, 혹은 법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총회총대 5회 이상인 자
4. 총회임원, 유관부서(정치부, 규칙부, 재판국)의 임원을 지낸 자
5. 위 3개 상비부 이외의 상비부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을 지낸 자 중 총회총대 7회 이상인 자

제7조(임기) 헌법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3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선출) 헌법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로 결원된 수만큼을 선출하되, 본 위원회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3배수의 후보군을 1차 공천하고, 총회임원회에서 선정한 총회임원 2인(목사, 장로 각1인)과 유관부서(정치부, 규칙부, 재판국)에서 선정한 부원 각 1인씩으로 구성된 5인의 “헌법위원 공천소위원회”가 1차 공천한 자 중에서 배수를 확정하여 최종 공천한 후, 총회는 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9조(보선)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헌법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헌법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동일한 직분자로 배수의 후보를 공천하여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 심의를 요청하고,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후보자 자격을 심의하여 후보자를 확정하며, 본 위원회 규정 제8조의 “헌법위원공천소위원회”는 후보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투표하여 보선한다. 이 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해임) 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본 교단법이 정한바 헌법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위원회, 또는 총회 임원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2. 헌법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현의안은 총회 정치부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본회에 상정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기각해야 한다.
3. 위의 1항과 2항의 경우, 총회총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즉시 해임된다.
4. 헌법위원회에 대한 해임 요구안이 결의되면, 결의된 때로부터 해당 위원의 신분과 지위는 자동으로 정지된다.

제11조(의무) 본 위원회 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성경과 헌법 및 총회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부당한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오남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3. 학연, 지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신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의무가 있다.

제12조(겸직금지)

1. 헌법위원은 총회임원, 상비부 임원, 총회 소속기관의 장이나 임원 및 각 위원회의 위원, 정치부원, 재판국원, 감사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2. 직무상, 혹은 직업과 관련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자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는 헌법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독립성 보장) 헌법위원은 다음 각항의 1과 같이 독립성이 보장된다.

1. 본 위원회의 위원은 신앙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총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총회총대권을 상실하지 않는 한 그 신분과 지위는 보장된다.
2. 어떤 개인이나 기관도 헌법위원회나 그 위원에 대하여 합법적 근거 없이 어떤 형태로든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3. 헌법위원이 섬기는 교회 앞에서 시위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헌법위원의 판단에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4. 이상의 각 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권징조례, 총회규칙 또는 총회결의가 정한 바에 따라 징직, 혹은 수찬 정지, 제명, 출교, 총대권의 제한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5. 언론사 등이 위의 각 항을 위반한 경우에 본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의 총회 출입 금지를 총회 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총회임원회는 이를 시행하게 해야 한다.

제14조(헌법위원의 소송비용) 헌법위원회에 대한 소송이 그 직무의 합법적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총회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15조(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조직: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총무 1인
2. 선출: 임원의 선출은 본 위원회에서 하며, 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 위원장의 추천으로 본 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본 위원회의 회무 일체를 통괄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협조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3. 서기 :
 - 1) 위원회의 각종 회의 절차를 준비한다.
 - 2)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3) 분회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인장을 비치 보관한다.
4. 총무 :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행 계획을 기획, 관장한다.
5. 회계 : 본 위원회의 재정운영 사항을 관장한다.

제17조(전문위원)

1.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필요한 인원만큼 전문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총회임원을 지낸 자나 교단 신학교의 교수, 신학 혹은 법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헌법위원이나 헌법위원회 준비위원을 지낸 자, 변호사, 또는 법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선임하되, 임기는 1년이다.
3. 전문위원은 총회총대가 아니어도 가능하나 본 교단의 성도이어야 하며,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만 한다.

제3장 회의

제18조(회의소집)

1. 전체회의 : 위원장이 필요 시, 또는 위원의 1/3 이상이 요청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의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3. 전문위원회의 :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제19조(결의요건)

1. 위헌 여부의 결정,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 위원 해임요구 결의, 헌법개정안 제안의 경우에는 본 위원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2. 헌법적 질의에 대한 답변, 결정 등 일반적 결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4장 심의

제20조(심의의 청원)

1. 본 위원회에 헌법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권한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원 또는 질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회서기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본 위원회 서기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청원서의 접수가 거부된 때에는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하여 본 위원회 서기에게 직접 접수할 수 있다.

제21조(제척사유) 본 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는 청원안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척된다.

1. 해당 청원안의 당사자이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2.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
3. 해당 청원안에 관계된 적이 있는 자

제22조(권한 있는 청원자) 헌법위원회가 접수할 수 있는 청원서는 다음과 같이 권한 있는 자가 제출한 것이어야 한다.

1. 위헌 여부를 결정을 구하는 청원의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만이 청원할 수 있다.
2. 권리 침해에 따른 헌법 소원을 구하는 경우에도 권리 침해를 받은 당사자만이 청원할 수 있다.
3. 헌법의 유권해석을 요하는 질의의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 총회 상비부, 총회 산하 위원회 및 기관의 결의에 따라 해당 부서장 명의의 공문, 또는 총회 산하 각 치리회의 결의 또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 치리회장 명의의 공문으로만 한다.

제23조(청원 기한 및 접수) 위헌 심의, 헌법 소원에 관한 청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청원 사유에 대해서는 청원 기간과 상관없이 헌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청원을 접수할 수 있다.

제24조(청원서 등본의 송달) 본 위원회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 청원기관 또는 피 청원인(이하 "피 청원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 기간) 위헌 심의, 헌법 소원, 헌법 질의 등의 청원이 있으면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본 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며, 심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제26조(심의의 한계) 본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의 적용, 해석에 관한 내용만을 심의, 결정하며, 그 외에 헌법과 무관한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본 규정이 정한 바 권한 있는 자가 청원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3. 치리기관에 의해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없다. 다만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처리를 해태(懈怠)함으로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청원자의 청원에 의해서 심의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의 방식) 위헌 심의와 헌법 소원 등 헌법에 관하여 판단의 청원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청원에 대한 결정) 본 위원회는 헌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1과 같이 결정한다.

1. 청원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
2. 청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인용 결정을 하며,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권리와 그 원인이 된 치리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 그것이 위헌임을 결정한다.
3. 청원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한 때에는 청원인은 해당 기관(치리회 포함)의 결의, 처분, 결정, 판결 등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결정문 공포) 본 위원회가 청원 사항을 심의, 결정한 후에는 그 결정문을 청원인과 피청원인 그리고 총회 임원회에 각각 문서로 송달하며,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개인정보는 보호한다.

제30조(일사부재리) 헌법위원회는 이미 심의를 거쳐 판단을 마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의할 수 없다.

제31조(결정의 효력) 본 위원회의 헌법적 결정은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된다. 다만 총회가 총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총대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본 위원회의 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때 총회의 결의는 헌법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이 된다. 헌법위원회는 해당 총회 결의에 대하여 재 심의할 수 없다.

제32조(효력의 유보) 본 위원회가 헌법에 관하여 심의,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었더라도 과거의 모든 개별 사건들에 대하여 즉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본 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재결의, 재심의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심의 비용) 본 위원회의 심의 비용은 총회의 경비에서 처리하되, 각종 청원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인은 소정의 심의 비용을 총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헌법 연구) 본 위원회는 헌법 세미나 개최, 헌법 해설집이나 판례집의 발행 등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38조(재정) 본 위원회는 총회 예산으로 운영한다.

제39조(회계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말까지로 한다.

부칙

1. 본 위원회의 규정은 위원회 1/3 이상의 발의와 출석 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고,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2.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과 규칙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3. 본 규정은 총회 승인 즉시 발효한다.

헌법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일, 2018. 9.

2. 헌법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1년 연장 청원

헌법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실제적 준비를 위해 본 위원회를 한 회기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헌 법 위 원 회 설 립 준 비 위 원 회
위원장 정진모
서기 한규철